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100번째 FLC 한진덕 변호사의 미 변호사 성공기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kabc.or.kr

02
9 771976~488000
ISSN 1976~488X 정가 11,000원

(주)리걸타임즈

‘올해 주목할 로펌’ 법무법인 세한
두바이에서 꿈 키우는 한국계 변호사들
2015년 검사평가 · 법관평가 내용

심희정 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요건

지난해 금융업계의 화두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은 (가칭) 한국카카오은행과 (가칭) 케이뱅크, 2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하면서 이제 그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은행 설립인가가 내려진 것은 23년만으로, 지점망 없이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금융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혁신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기술의 각축장 된 금융업

물론 이전에도 금융업에서 ICT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채널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지점 등 전통적인 대면(對面) 방식에 의한 거래를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만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으며, 보험사의 경우 OO다이렉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이미 일반화되었다. OO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각종 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증가하면서 현금, 신용카드에 이은 제3의 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엄격한 수준 비식별화 고집하면 세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곤란**

이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서 금융업은 바야흐로 최첨단 ICT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한 제도들이 아직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된 제도가 바로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제도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래 약 20년간 실명확인은 반드시 대면확인, 즉 신분증에 부착된 사진과 본인을 실제로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금융거래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는 실명확인을 위하여 최소 한 번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그런데 지점망 없이 온라인만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실명확인을 위하여 오프라인지점을 개설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줄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 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본인 확인, 기존 계좌 활용, 생체 인증 등의 방법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방식에 의한 실명확인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또 하나의 규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들의 기존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과의 차이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등 이종 산업에서의 정보 분석에 기반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기 때문

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2개의 컨소시엄은 모두 인터넷상거래상의 결제, SNS, 통신 내역 등 이종 산업의 고객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영업계획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들에 국내 유수의 비금융 ICT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 ICT 기업들의 고객 기반 및 고객 활동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은행들의 대출상품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상거래 내역, SNS 활동 내역 등의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신용평가모델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기존 은행들의 신용평가모델이 담지 못한 정보까지 포함한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및 그에 맞춘 중금리 대출상품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상거래 내역, SNS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는 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허용

정부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즉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위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업모델의 경우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라도 다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계기
금융산업 도약 기회 삼아야”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비식별화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있다. 특히 정보기술이 발달한 현대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을 수 있다. 반면 아주 엄격한 수준의 비식별화를 고집한다면 빅데이터에 따른 세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거주지역까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은 감소하겠지만 정교한 정보 분석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신용평가나 금융서비스 제공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을’의 행동을 분석하여 만든 신용평가모델과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행동을 분석하여 만든 신용평가모델은 그 정교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편리한 금융서비스 양자 간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산업에서 세계 수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유독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スタン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규제와 이러한 금융규제 하에서 안주하며 지내온 금융업계가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계기로 금융규제와 금융업계 모두가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우리의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심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hjshim@jipyong.com)